

강원도립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 규정

(제정) 1998-06-19 규정 제028호
(개정) 2000-10-19 규정 제098호
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54호
(개정) 2013-07-01 규정 제327호
(개정) 2016-02-18 규정 제388호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총장, 교학처장, 산학협력단장, 학생생활관장, 학생상담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6.2.18.><개정 2016.4.25>

제3조(위원장)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>

제4조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3>

제5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0.5.3>

제6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7조 제2호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포상에 관한 사항
2. 학생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
3. 학생회 회칙 및 조직에 관한 사항
4. 학생회비에 관한 사항
5.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에 관한 사항
6. 학생회 예산편성, 지출,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학생지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3.7.1>

제8조(의견청취) 제7조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관련된 교직원 및 학생을 출석케 하여 관련 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(세부사항)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서면결의)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.

부 칙(1998. 6. 19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0. 10. 19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3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7. 1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2. 18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